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8. 12. 17
시민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1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('98.12.17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조한영 산업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마포구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던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기준 등이 개정된 공중위생법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마포구 조례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중위생법시행령('98.8.11.대통령령제15864) 제28조의 전문개정으로 동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됨에 따라,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○ 그러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의 전문개정일이 '96년 6월 29일 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 조례의 폐지가 상당기간 지연되었는바,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 등 각종 규정 검토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8. 11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마포구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던 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기준등이 개정된 공중위생법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를 폐지함.

3. 폐지근거 : 공중위생법('97.12.13.법률제5453호)제43조,제44조
공중위생법시행령('98.8.11.대통령령제15864호)제28조

4. 폐지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